

미주자치연회에 대한 개정 청원서(기안)

미주자치연회는 미주지역(북미와 중미) 안에 있는 한국 감리교회들로 구성되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현지법에 따라 연회를 조직할 필요성을 가지고 조직되어 지금까지 산고의 고초를 겪으면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연회 운영을 위해 모든 연회원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짧은 기간의 자치적인 운영을 했으나 몇 번의 위기를 극복하여 운영의 노하우로 축적되었기에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다음과 같은 독립적인 미주자치연회 자치권에 관한 개정을 청원합니다.

개정안

1. 헌법 개정안

현지의 상황에 맞는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주자치연회에 독립적인 자치권을 부여한다. 자치권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신설>

2. 법률 개정안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 8 장 미주자치연회

현행안

【333】 제133조(미주자치연회 조직의 목적) 미주자치연회는 미주지역 안에 있는 한국 감리교회들로 구성하며 교회재산 관리와 종교법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보유함에 있어서 미국 현지법에 따라 연회를 조직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를 조직한다.

개정안

【333】 제133조(미주자치연회 조직의 목적) 미주자치연회는 미주지역(북미와 중미) 안에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한인 감리교회들로 구성하며 교회재산 관리와 종교법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보유함에 있어서 회원교회들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실정법에 따라 연회를 조직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를 조직한다. 다만, 미주자치연회의 경계 안에는 한국 내 연회 소속의 지방회나 혹은 개체교회를 둘 수 없다. <개정>

현행안

【334】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미주자치연회는 그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주자치연회는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자체적으로 입법하여 운영한다. 미주자치연회가 자치법을 제정, 개정, 폐지한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

【334】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미주자치연회는 그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독립적 자치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주자치연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를 함께 믿으며 독립적인 자치법을 자체적으로 입법하여 자치법에 따라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미주자치연회가 자치법을 제정, 개정, 폐지한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제4편 의회법

제 6 장 미주자치연회 <개정>

현행안

【584】 제84조(미주자치연회 직무) 미주자치연회의 직무는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에 준하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개정>

- ① 미주자치연회에 소속한 연회 회원도 국내 은급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2009년 1월부터 2017년까지 탈퇴기간은 제외하되 2009년 이전 은급수혜자는 종전의 법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다. <개정>
- ② 미주자치연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은급재단 이사 이외의 총회 및 본부의 이어나 위원을 파송하지 아니한다. <개정>

개정안

【584】 제84조(미주자치연회 직무) 미주자치연회의 직무는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에 준하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개정>

- ① 미주자치연회에 소속한 연회 회원의 은급은 2022년부터 국내 은급으로부터 분리한다. 다만, 2009년 1월부터 2017년까지 탈퇴기간만을 제외하고 2021년까지 은급수혜연한을 모두 계산하여 2019년도 장정의 은급법에 의하여 은급수혜자가 미주자치연회에서 은퇴하면 은급의 혜택을 받는다. <개정>

- ② 본부부담금은 미주자치연회 본부로 납부하며 미주자치연회 소속 모든 개체 교회에 책정된 본부부담금이 그대로 미주자치연회에 보내는 본부지원금으로 상계처리 한다. 따라서 미주자치연회 본부로 본부부담금을 납부하면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부담금의 납부로 인정한다. <신설>
- ③ 미주자치연회는 총회에 사절단 이외의 총회대표를 비롯하여 총회 및 본부의 이사나 위원을 일체 파송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주자치연회의 감독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의의 회원이 된다. <개정>
- ④ 미주자치연회원의 한국 내 연회로의 이명과 한국 내 연회원의 미주자치연회로의 이명은 한국 내 연회 간의 이명절차와 동일하다. <신설>
- ⑤ 미주자치연회원은 감독회장 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신설>